

서대문구



수신 서울특별시장(주택정책과장)

(경유)

제목 도시계획철거민 특별공급(장기전세)의 이주대책 수립 해당여부 검 토요청

- 1. 우리 구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(구 토지보상법)의 적용을 받는 사업구역내의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건물주에게 같은법 제78조(우리 구 수용가구 9戶), 같은법 시행령 제40조, 제4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의 따른 이주 정착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검토하고자 하니,
- 2. 도시계획사업지구내 거주중인 건물주가 협의에 응하여 ②'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'을 근거로 ③'서울주택도시공사(SH)'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바,
- 3. ③서울주택도시공사(SH)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이 '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'제78조(이주대책의 수립 등)의 '이주대책'에 해당하는지 검토요청하으니, '18.2.1.(목)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'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'

- **제78조(이주대책의 수립 등)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(이하 "이주대책대상자"라 한다)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<u>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</u>
- **같은법 시행령제40조(이주대책의 수립·실시)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(이하 "이주대책"이라 한다)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(이하 "이주대책대상자"라 한다)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**제41조(이주정착금의 지급)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1. 이주대책을 수립 ·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
- 2.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
- *제53조(이주정착금 등) ①영 제40조제2항에서 "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"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1.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
- 2.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, 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
- 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,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,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한다

서대문구청장

건설관리과장

협조자
시행 건설관리과-1831 (2018.01.26.) 접수 주택정책과-1731 (2018.1.26.) 우 03718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건설관리과 / http://www.sdm.go.kr 전화 02)330-8156 /전송 1648 / tomato7@sdm.go.kr / 비공개(6)

공공용지팀장

주무관